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1년 4월 30일

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1년 4월 30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를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

2. 주요내용

-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'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'를 추가함(안 제30조제2항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나. 조례안 예고 : 해당없음

다.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
라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제3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

3. 행정문화위원회

가. 공보관, 감사관, U대회추진과, 행정국, 문화체육관광국, 충청북도
자치연수원,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0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행정문화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공보관, 감사관, U대회추진과, 행정국, 문화체육관광국,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4. (생 략)</p> <p>5. (생 략)</p> <p>6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30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행정문화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----- -----충청북도 자치연수원,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 법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116조 (합의제행정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】

제18조 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으로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.

②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.

제24조 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) 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
2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, 예산, 장비,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

3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,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
4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, 제도, 정책, 관행 등의 개선
5.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
6.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·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,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
7.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
8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
9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
10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
11.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·사고 및 현안의 점검
12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
13.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·조정
14.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·명령에 관한 사무
15. 국가경찰사무·자치경찰사무의 협력·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
16.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·조정 요청
17. 그 밖에 시·도지사, 시·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·의결
 - ②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·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7조 (사무기구) 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.

② ~ ③ 생략

④ 사무기구의 조직·정원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조례로 정한다.

관 계 조 례

【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】

제63조(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법 제116조 및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치경찰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에 따라 자치경찰법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(이하 “자치경찰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 <신설 2021. 4. 30.>